

지난 11. 17(화)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제5회 LPG의날 행사가 열렸다. 이날 2부 순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게재한다.

한국가스안전공사

LPG 안전관리 현안 문제점 및 대책

1. 가스사고 현황

□ 연도별 가스사고 현황

(단위 : 건)

구 분	'05	'06	'07	'08	'08.9	'09.9	계(점유율%)
LP가스	162	179	189	146	105	85	761(72.5)
도시가스	41	44	51	39	31	11	186(17.7)
고압가스	18	29	24	24	20	8	103(9.8)
계	221	252	264	209	156	104	1,050(100.0)

□ 분석

- 최근 5년간 가스사고는 연평균 2.0% 감소추세에 있음.
 - 2009년 3분기 가스사고는 104건 발생하였으나, 전년대비 33.4% 감소함.
 - LP가스사고는 연평균 0.1% 감소함 [2007년 이후 급격히 사고감소]
- 그러나, LP가스사고는 전체 가스사고의 72.5%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함.

□ 원인별/가스별 사고현황 [2009. 9월 현재]

(단위 : 건)

구 분	계	구성비(%)	LPG		도시가스		고압가스	
			점유율	점유율	점유율	점유율		
계	104	100	85	100	11	100	8	100
사용자취급부주의	39	38	35	41	0	0	4	50
공급자취급부주의	10	10	8	9	1	9	1	13
타 공 사	1	1	0	0	1	9	0	0
시 설 미 비	16	15	13	15	3	27	0	0
제 품 노 후(고장)	11	11	10	12	0	0	1	13
기 타	17	16	12	14	3	27	2	25
고 의 사 고	10	10	7	8	3	27	0	0

□ 분석

- 사용자취급부주의와 시설미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.
- 공급자취급부주의 사고는 8건으로 전년(6건)으로 동기대비 33% 증가
- CO중독 사고는 8건으로 전년(3건)으로 동기대비 166% 증가

2. 「안전수준평가(QMA)제도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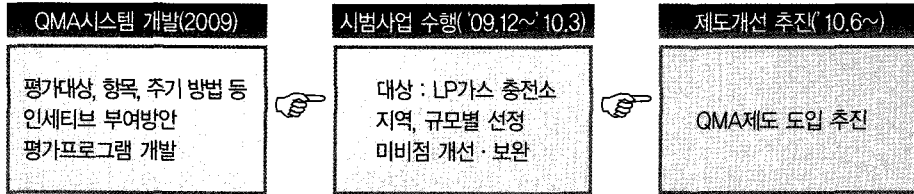
□ 추진배경

- 안전관리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
 - 현행 단순 합·부 판정 검사방식을 선진 안전수준평가(QMA)방식 체계로 전환함
 - ※ QMA (Quantitative Management Assessment)
 - 전산프로그램을 활용, 가스시설의 안전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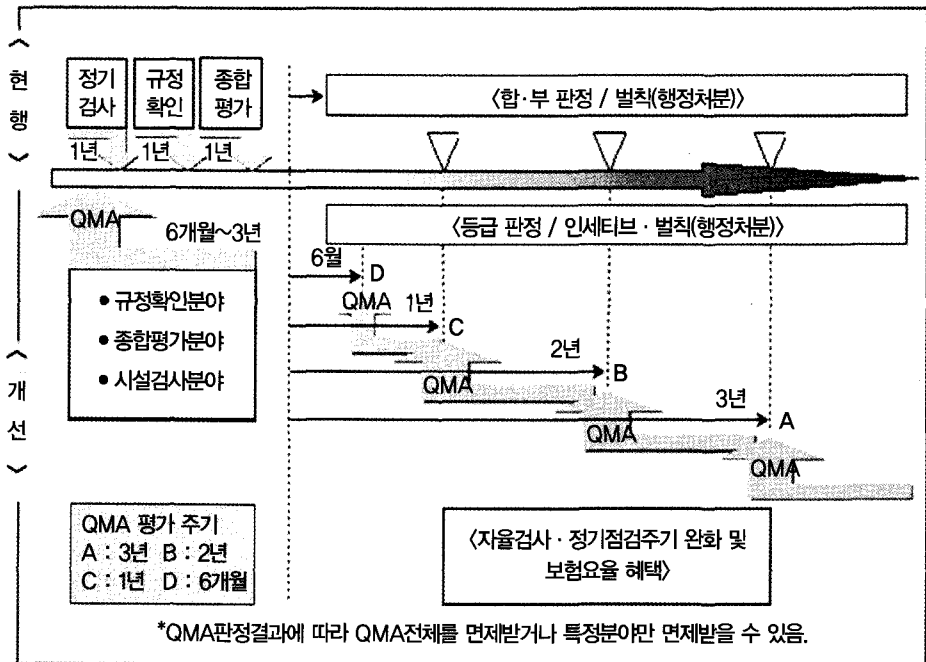
□ 추진방향

- 정기·수시검사, 안전관리규정 준수 확인 평가, 안전관리규정 종합평가 등 현행의 사후관리 제도를 QMA로 통합 하여 사업자의 불편 해소
- 우수사업자에 대한 정기(자율)검사 주기 완화, 보험료 할인 확대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자율 안전관리 정착·유도
- 컨설팅 방식의 검사를 통한 검사품질 향상

□ 추진일정



□ 안전수준평가(QMA)제도 도입 및 추진방향



3. LPG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시기조정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LPG특정사용자가 정기검사 신청을 기피하고 있음.
- 완성검사 물량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과 즉시 영업을 시작하여야하는 완성검사 처리가 우선 이므로, 정기검사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되는 사례 발생
- 업소별 정기검사 기준일(완성검사일 기준 매 1년)이 상이하여 동일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함으로써 인력낭비와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임.

□ 개선내용

현행
완성검사 전 후 30일



개선
읍·면·동별로 검사시기를 지정
(지자체 고시 개정 및 공포 : '10년 1월 시행)

- LPG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시기가 변경됨에 따라, LPG판매사업자의 기술기준인 수요자시설의 수검여부 확인이 필요 [지역별 검사시기 확인 요망]
- ※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LPG특정사용시설에 가스를 공급할 경우, 가스공급자 및 사업자는 200만원 과태료(액법 제52조 제2항)

4.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 제도

□ 추진배경

- LP가스판매업체의 안전관리 투자 및 자율안전관리를 촉진하고, 우수판매업체 공표에 의해 사업자는 양질의 소비자 확보로 매출이 증대되고, 소비자는 우수한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
- 연 2회(2월, 8월) 운영기관장에게 신청



□ 인증사업자 인센티브

-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(40%)부여
- 정기검사 3년간 면제(액법 시행규칙 개정 : 시행일 '09. 9. 26)
- 각종 정부사업 참여 및 정부포상 등 우선 추천
- 가스안전관리 자금지원 1억원 우선 추천
- 인증업체간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(공사홈페이지 참조)

5. 소형저장탱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

□ 소비자보장책임보험

- 소형저장탱크 설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도 소비자보장책임보험 혜택부여 [액법 시행령 제16조]
- 용기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,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도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

→ 가스사고 발생시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소형저장탱크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

□ 안전관리자

○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완화 [액법 시행령 별표 1]

-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저장능력 기준을 현행 0.5톤 초과에서 1톤 초과로 완화함.

→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 및 액화석유가스의 유통비용 절감으로 액화석유가스의 가격 인하를 통한 LPG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6. 정보제공 시스템

□ 현황 및 문제점

○ 소비시설 안전점검표 등 수기보고서 작성으로 행정업무 과다 소요

※ 행정업무시간 : 8시간/월×4,681개소×12개월 = 449,376시간 (인력 : 220명)

○ 공급자가 사용자의 검사대상, 검사수검, 부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공급자 의무규정 위반 사례 다수 발생

□ 개선내용

○ 가스안전 주요정보를 지자체, 가스공급자, 공사가 인터넷을 활용,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행정업무 경감 및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

○ LPG공급자는 법령에 의거 수기 제출하는 소비설비안전점검과 위해예방조치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

○ 사이버지사 제공기능 (조회/입력)

- 정기검사 : 정기검사 미신청업소 조회

- 부적합업소 : 검사 부적합업소 사후관리 내역 조회

- 공급업소 명단 : 가스를 공급하는 검사대상시설 명단 조회 (도시가스사 제외)

- 점검결과 입력 : 소비설비 안전점검결과 입력 (LPG판매업소)

- 위해예방 조치 : 위해예방조치신고서 입력 (LPG판매업소)